부천시청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08년 6월 30일 부천시장 제출

나. 회부일자 : 2008년 7월 1일

다. 상정 및 의결일자

○ 제145회 부천시의회(정례회) 제6차 행정복지위원회(2008년 7월 15일) 상정

○ 제145회 부천시의회(정례회) 제6차 행정복지위원회(2008년 7월 15일) 원안

2. 제안설명 요지

(제안설명자 : 체육청소년과장 김창열)

❑ 제안이유

○ 부천시청 직장운동부의 경쟁력 강화와 성적향상을 통하여 부천시의 위상을 제고하고자 단원 임용 체계의 개선, 감독의 책임성 강화, 선수 장려금의 지급기준을 확대하고

○ 현행 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고 보완하고자 조례 일부를 개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 단원의 임용기간은 임용계약에 따른 기간으로 함.(안 제4조제2항)

○ 감독의 직무에 훈련·경기의 총괄 및 우수선수 발굴육성을 추가하여 책임성을 강화함.(안 제6조제2항)

○ 단원의 훈련에 강화훈련, 전지훈련 및 특별훈련 등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함.(안 제9조제2항)

○ 선수장려금의 지급기준을 전국규모대회 입상에서 경기도 체육대회 이상 대회의 입상으로 확대함.(안 제13조)

3. 질의 및 답변요지

질 의 내 용	답 변 내 용
○ 직장운동부 단원의 계약기간은 규칙으로 정할 것인가?	○ 시행규칙을 호봉제에서 연봉제로 개정할 계획임.
○ 직장운동부 단원의 평균 연봉은 어느정도 되는지?	○ 약 3,800만원 정도임.
○ 2007년도 직장운동부중 국내 대회에서 우승한 종목은 있는가?	○ 검도, 육상, 수영 종목에서 우승하였으며, 금년에는 테니스부가 우승하였음.
○ 인사위원회에 외부인사가 참여하여야 한다고 보는데?	○ 반영하겠음.

4. 토론요지

가. 반대토론 : 없음

나. 찬성토론 : 없음

5. 심사결과 : “원안가결”

6. 소수의견 요지 : 없음

7.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부천시청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 안 번 호	제265호
의 결 년월일	2008. 7. 18 (제145회)

제출년월일 : 2008. 6. 30

제 출 자 : 부 천 시 장

□ 제안이유

○ 부천시청직장운동경기부 단원의 임용기간을 계약기간으로 하고, 감독의 직무에 우수선수의 발굴육성을 추가하여 책임성을 강화하는 등 현행 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단원의 임용기간은 임용계약에 따른 기간으로 함.(안 제4조제2항)

나.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하도록 새로이 규정함.(안 제5조제2항)

다. 감독의 직무에 훈련·경기의 총괄 및 우수선수 발굴육성을 추가하여 책임성을 강화함.(안 제6조제2항)

라. 단원의 훈련에 강화훈련, 전지훈련 및 특별훈련 등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함.(안 제9조제2항)

마. 선수장려금의 지급기준을 전국규모대회 입상에서 경기도체육대회 이상 대회의 입상으로 확대함.(안 제13조)

부천시청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천시청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체육진흥법」 제10조에 따라 부천시청직장운동경기부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직장 체육진흥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중 “제1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천시청직장운동경기부”를 “부천시청직장운동경기부”로 한다.

제3조제2항 중 “코우치”를 “코치”로 한다.

제4조의 제목 “(임용권자)”를 “(단원의 임용)”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단원의 임용기간은 임용계약에 따른 기간으로 한다.

제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5조(인사위원회) ① 선수단의 인사관리를 위하여 부천시청직장운동경기부인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6조의 제목 중 “단장등”을 “단장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단무를 처리한다”를 “훈련 및 경기를 총괄하며, 우수선수를 발굴육성 하여야 한다”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코우치”를 “코치”로 하고, “유고

시”를 “유고 시에”로 한다.

제7조제2항 중 “단원의 신규임용에 있어서는”을 “단원을 신규로 임용할 때에는”으로 하고, “필하여야”를 “마쳐야”로 한다.

제8조 및 제9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8조(겸직의 금지) 단원은 시장의 사전 승인 없이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

제9조(복무 및 훈련) ① 단원의 복무에 관하여는 시장이 따로 정하는 사항을 제외하고는 「부천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를 준용한다.

② 단원의 훈련은 합숙훈련과 비 합숙훈련으로 구분하여 실시하되,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강화훈련, 전지훈련 및 특별훈련 등을 실시할 수 있다.

제11조 중 “범위안”을 “범위 안”으로 하고, “의하여”를 “따라”로 한다.

제12조 중 “범위안”을 “범위 안”으로 하고, “보상”을 “지급”으로 한다.

제1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3조(선수장려금) 시장은 경기도체육대회 이상의 대회에서 입상한 자 및 입상한 자의 지도자(감독 및 코치를 포함한다)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장려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14조 중 “권익보장을 위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하여야 한다”를 “권익보장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로 한다.

제15조 중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을 “시행에 필요한”으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체육진흥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천시청직장운동경기부의 설치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체육진흥법」 제10조에 따라 부천시청직장운동경기부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직장 체육 진흥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치종목) 제1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천시청직장운동경기부에는 육상선수단·검도선수단·수영선수단·레슬링선수단·탁구선수단 및 테니스선수단(이하 “선수단”이라 한다)을 둔다.	제2조(설치종목) 부천시청직장운동경기부----------.
제3조(구성) ① (생 략) ②단장은 체육업무담당국장이 되며, 단원은 감독, 코우치, 선수로 구성한다. ③ (생 략)	제3조(구성) ① (현행과 같음) ② ----------코치----------. ③ (현행과 같음)
제4조(임용권자) ① (생 략) ②단원의 임용은 발령과 임용장의 교부로써 행한다.	제4조(단원의 임용) ① (현행과 같음) ② 단원의 임용기간은 임용계약에 따른 기간으로 한다.
제5조(인사위원회) 선수단에 관한 인사관리를 위하여 부천시청직장운동경기부인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5조(인사위원회) ① 선수단의 인사관리를 위하여 부천시청직장운동경기부인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6조(단장등의 직무) ① (생 략)	제6조(단장 등의 직무) ① (현행과 같음)

현 행	개 정 안
②감독은 단장의 명을 받아 단원을 지휘·감독하고 단무를 처리한다.	② ----------훈련 및 경기를 총괄하며, 우수선수를 발굴육성 하여야 한다.
③코우치는 감독을 보좌하며 감독의 유고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코치----------유고 시에----------.
제7조(임용자격) ① (생 략)	제7조(임용자격) ① (현행과 같음)
②단원의 신규임용에 있어서는 사전에 신원조회를 필하여야 한다.	② 단원을 신규로 임용할 때에는 ----------마쳐야----.
제8조(겸직금지) ①단원은 시장의 사전 승인없이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	제8조(겸직의 금지) 단원은 시장의 사전 승인 없이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
②단원의 복무에 관하여는 시장이 따로 정하는 사항을 제외하고는 「부천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를 준용한다.	〈삭 제〉
제9조(훈련) 단원의 훈련은 합숙훈련과 비합숙 훈련으로 구분하여 실시한다. 1. 합숙훈련은 연간 300일로 한다. 2. 비합숙훈련은 감독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실시할 수 있다. 3. 단원의 훈련장소는 감독이 따로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9조(복무 및 훈련) ① 단원의 복무에 관하여는 시장이 따로 정하는 사항을 제외하고는 「부천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를 준용한다. ② 단원의 훈련은 합숙훈련과 비합숙훈련으로 구분하여 실시하되,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강화훈련, 전지훈련 및 특별훈련 등을 실시할 수 있다.
제11조(보수) 단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수를 지급한다.	제11조(보수) ----------범위 안----------따라----------.

현 행	개 정 안
제12조(실비보상) 단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실비를 보상할 수 있다.	제12조(실비보상) ----------범위 안----------지급--------.
제13조(선수 장려금) 전국규모대회 등의 입상자 및 입상자의 지도자(감독·코우치)에게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장려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13조(선수장려금) 시장은 경기도체육대회 이상의 대회에서 입상한 자 및 입상한 자의 지도자(감독 및 코치를 포함한다)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장려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14조(신분 및 권익보장) 시장은 단원의 신분 및 권익보장을 위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하여야 한다.	제14조(신분 및 권익보장) ----------권익보장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5조(시행규칙) --------시행에 필요한----------.